

연구보고서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2005.9

류건식 · 김해식

머리말

예금보험기금은 지급불능에 처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정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가입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여 보험권에게 부당하게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우량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서 자사의 두 배에 달하는 우량 은행과 동일한 금액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험권의 시장 불안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크다는 상황옹호론도 있고, 반대로 아반떼와 그랜저의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같아지는 상식 밖의 결과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예금보험기금은 목표기금제와 보험료차등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목표기금제는 적립할 금액만 사전에 정해 놓겠다는 것일 뿐이어서 목표금액과 적립기간에 따라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행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보험료차등제 역시 보험료 부담을 대형사에서 단지 중소형사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산출이라는 틀만 가지고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도 전체의 큰 틀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원은 그동안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1999.12),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보험부문을 중심으로’(2005.1)를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보험권에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번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

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과 조화하되 자기중심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이한 금융권의 기금들을 통합한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의 특성을 포용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가 예금보험제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는 재무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류건식 연구위원과 김해식 선임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원 안팎의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보험사들은 수일에 걸친 까다로운 통계 추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발간되기까지 연구 과정에서 지혜를 나눠주신 여러분과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005년 9월
원장 김 창 수

목 차

요 약	5
I. 서론	13
1. 연구 목적	13
2. 선행 연구	15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18
II.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역할과 특성	19
1. 보험사 지급불능과 보험계약자 보호	19
2. 보호기금의 필요성과 역기능 보완	22
III.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추세	30
1. 보호기금 설계와 운영에 대한 일반 원칙	30
2. 세계 각국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현황	34
IV.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	46
1.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46
2.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	53
V.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57
1. 보상한도와 적립목표액의 추정	57
2.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69
VI. 결론 및 제언	73
참고 문헌	75
[부록] 금액계층별 해약환급금 및 지급보험금 분포	78

<표 차례>

< 표 II-1 >	보호기금의 역기능과 해소방안	27
< 표 III-1 >	EU의 보호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2
< 표 III-2 >	OECD 회원국의 보호기금 보유 현황	35
< 표 III-3 >	OECD 회원국 보호기금의 보상 한도	37
< 표 III-4 >	OECD 회원국의 기금 운영 현황	40
< 표 IV-1 >	기금통합 전·후의 보장한도와 각출금 산출 기준	46
< 표 IV-2 >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납부 현황	48
< 표 IV-3 >	보험권과 은행권의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실적	49
< 표 V-1 >	분석 대상 및 데이터	57
< 표 V-2 >	보상한도의 추정방법	58
< 표 V-3 >	목표기금의 추정방법	59
< 표 V-4 >	1인당 GDP 대비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의 추정	60
< 표 V-5 >	1인당 GDP 대비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의 추정	61
< 표 V-6 >	보험권과 은행권의 금액계층별 소비자 구성비	62
< 표 V-7 >	지급보험금의 계약자 구성비	63
< 표 V-8 >	생명보험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65
< 표 V-9 >	손해보험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66
< 표 V-10 >	외환위기 이후 보험시장 해지율 추이	66
< 표 V-11 >	기금의 부실보험사 지원 실적	67
< 표 V-12 >	구조조정에 필요한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68
< 표 V-13 >	보상한도의 조정안	69
< 표 V-14 >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의 설정	70
< 표 V-15 >	단일기금과 복수기금의 비교	71

<그림 차례>

< 그림 III-1 >	목표기금과 사후각출	41
--------------	------------------	----

요 약

- 최근 수년간 예금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의 통합 이후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은 물론이고 보험권의 경우에는 산출기준도 상향 조정됨으로써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 이에 산출기준 조정이나 요율 인하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금융권간 형평성, 기금 부족 우려 등 현실적 장애에 부딪혀 진전이 없음.
- 최근에는 목표기금제와 보험료차등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그동안 보험권에서 제기하여 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따라서 예금보험제도의 특성과 기본 틀을 모색하고, 세계보험시장의 기금 운영 실태를 통하여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의 목적은 위험으로부터의 보장(security)이기에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는 보험사의 신뢰 유지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에 따른 보험권 감독규제도 금융권 중 가장 보수적임.
- 따라서 법령 등을 통하여 누가 보험상품의 판매와 인수를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업 지속 요건을 정하여 보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일반적 특징임.

- 다른 한편으로 보험시장은 보험사가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는 경쟁시장으로 변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크게 파산절차 안에서의 법령상 보호와 밖에서의 보호기금이 있는데, 보험권에서는 법령상 보호가 기금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보다 보편적임.
- 법령상 보호제도인 우선변제제도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에게 근로자, 조세당국 등과 동일한 채권자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은행권에서는 드물지만, 보험권에서는 보편적 제도임.
- 반면, 은행권에서는 보편적인 보호기금 설치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보험권에서는 아직까지 많지 않으나, 점차 기금을 설치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음.
-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 지급불능 파급효과 차단, (2) 최후의 안전망, (3)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연스런 퇴출장치 제공, (4) 금융권간 공정경쟁 유지라는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예금자의 인출쇄도(bank run)에 따른 지급불능 파급효과(contagion effect)의 차단을 은행권에서는 보호기금 설치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보고 있음.
- 이는 예금자가 애초에 약속된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미래 이자를 포기하는 것만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므로, 한 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으로 파급될 시스템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임.

- 또한, 보호기금은 금융소비자에게 최후의 안전망이며, 신속한 부실처리로 감독당국의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 경향을 억제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
- 그러나 이러한 보호기금의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역할들은 금융권의 특성에 따라 그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보호기금에서도 도덕적 해이, 역선택, 대리인 문제 등의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적정 규모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완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손실을 금융소비자와 분담하는 부분보장제도,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식별과 신속한 정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 등은 기금의 역기능을 줄이려는 대표적 보완수단들임.
- 기금의 필요성과 역할의 경중이 다르면, 기금 설계와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이는 보험권과 은행권에도 해당됨.
-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에게 상당한 원금 손실과 보장 상실을 초래하므로 해지쇄도(insurance run)로 인한 보험권에서 연쇄적인 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은행권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보험계약자는 수십 년간의 계약유지 이후에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거나 아예 구매하지 못할 수 있음.

- 보험사 파산의 영향은 즉각 시장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적 리스크 증가로, 정부의 리스크 증가로 옮겨가는 보이지 않는 터널효과가 존재함.
- 따라서 보험권의 보호기금은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차단보다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보험권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법령상 보호와 기금을 통한 보호에서 큰 차이가 없고, 파산 처리에서도 계약이전이나 인수합병에 의한 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강조되는 이유임.

< 표 1 > 기금통합 전·후의 보장한도와 예금보험료 산출 기준

구 분	~ 1997.11	1997.11	1998.8	2000.8	
법률근거	예금자보험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		예금자보호법 (통합)		
보상한도	2,000(은행 등)/5,000만원(보험)		무제한	5,000만원	
산출기준	수입보험료		준비금	수보+준비금	
보험료율	은행	0.02%	0.03%	0.05%	0.10%
	보험	0.10%	0.15%	0.15%	0.30%
	증권	0.10%	0.15%	0.10%	0.20%

- 기금통합 후 타 금융권 보상한도는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험권의 보상한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보험료 산출기준이 수입보험료에서 준비금으로 높아져 보험사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함.

- 현행 보상한도는 보험계약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결과를 초래함.

-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의 시장규율 강화 차원에서 보험료차등제와 목표기금제 도입 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보험권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전체적 틀에 비추어 현행 또는 향후에 추진될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가 요구됨.

- 최근 EU는 25개 회원국들에게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5대 원칙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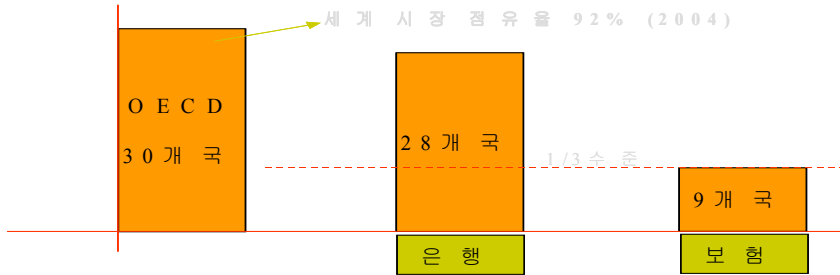
- EU는 회원국들에게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할 것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운영할 경우 상호보조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금의 분리 원칙을 제시함.

- 또한, 보호대상은 비전문적 보험계약자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보험사 선택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을 묻는 부분 보장을 원칙으로 제시함.

- 세계 여러 나라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운영 현황은 은행권 등 다른 금융권과 보험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OECD 30개 회원국 중 28개국이 파산 확산에 대응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파산 확산 가능성이 적은 보험의 경우 기금을 설치한 나라는 9개국에 불과한 실정임.

< 그림 1 > OECD의 은행권과 보험권 보호기금 운영 현황



-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보험을 다른 권역과 분리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영국은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하나의 관리 주체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철저한 분리계정과 상이한 보상한도 적용 등 다른 나라의 기금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적립은 사전적립과 사후각출 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혼합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
- 기금 적립규모는 나라마다 다르나, 생명보험은 3,000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이보다 규모가 더 낮은 수준임.
- 이와 더불어 기금의 보상한도는 보험금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미국 등은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보상한도를 은행권 수준에 맞추는 이원적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은 각각 100,000달러 및 200,000캐나다달러 수준인 반면, 보험금 기준은 각각 300,000달러 및 60,000캐나다달러 수준임.
- 특히 보험요율 산출기준으로서는 준비금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음.
-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계약자 보상한도를 조정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목표기금제 도입과 기금간 상호보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복수기금제 도입이 필요함.
- 보상한도는 사고 보험금 보상한도는 높이고, 계약 중지에 따른 환급금 보상한도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2 > 보상한도 설정

구분	해약환급금	보험금	근거
현행	5000만원		- 보험금 기준으로는 부족 - 도덕적 해이방지에 미약
제1안	2000만원 (전액보상)	2000만원+ 초과분× 90%	- 소액계약자 보호 중점 - 고액계약자 도덕적해이 방지 - 충분한 보상한도
제2안	보험금(해약환급 금포함)× 90%		- 전계약자 도덕적 해이방지 - 충분한 보상한도

-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사후 각출과 사전적립이 혼용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함.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진행된 구조조정 실적을 근거로 목표기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생명보험은 5,400억원, 손해보험은 2,424억원 규모로 추정됨(제1안).
- 한편, 급격한 해지율 증가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상정하여 목표기금을 산정하는 경우 생명보험 목표기금은 약 3,856억원, 손해보험 목표기금은 약 1,480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제2안).

< 표 3 > 목표기금의 설정

구분	제1안 (구조조정 실적)	제2안 (해지율 반영)
생명보험	5,400억원	3,856억원
손해보험	2,424억원	1,480억원

I. 서론

1. 연구 목적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권 기금들을 통합하여 1998년 통합예금보험기금으로 출범한 이래, 금융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험권의 경우 15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9조1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으며, 은행권의 경우 46조원, 증권권의 경우 7조4천억원 등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108조6천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이 소요되었다¹⁾. 이렇듯 막대한 자금 소요는 정상적인 예금보험기금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소요자금은 기금이 자체 조달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이루어졌다. 기금 위주의 시장 기능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 의한 구조조정이었던 것이다. 시장이 안정되면서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시장의 자정능력, 즉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작동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체질 개선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²⁾.

2001년 예금보험기금은 외환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무제한 보상을 다시 부분보장제로 전환하였고, 정부 지원으로 운영된 2002년까지의 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으로 명명하여 2003년 이후의 예금보험기금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³⁾. 최근에는 가입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따라서 금융기

1) 예금보험공사(2005), p.21, p.21 참조.

2) 이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는 예금보험공사(2001) 참조.

3) 상환기금과 구분하기 위해 2003년 이후의 기금은 ‘新예금보험기금’이라 불리기도 하며, 이는 통상적인 예금보험기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금은 예금보험기금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관별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안과 각 금융권역별 기금적립액을 사전에 정해 놓는 목표기금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금의 시장규율기능 강화라는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기금은 확일적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과 기금에서 분리된 상환기금이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보험사, 증권사 등과 예금보험기금 간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까지의 상환기금은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자금을 각 금융기관들에게 부과시키는 사후각출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금융권별로 투입된 자금만큼 해당 금융권의 금융기관들에게 보험료를 소급하여(소급보험료) 부과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기금이 공정한 룰(rule)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금은 모든 금융권을 하나로 취급하여 전체 손실을 각 금융권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였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이 투입된 금융권과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된 금융권에는 0.1%의 동일한 보험요율이 2003년부터 향후 25년간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 받은 지원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금융권이 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는 금융권의 손실을 대신 메워주는 상호보조(subsidy)가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보험권은 상환기금에 내는 소급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0.1%의 요율 이외에 산출기준도 수입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어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⁴⁾.

또한, 2003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예금보험기금에서도 보험료 산정⁵⁾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최근 기금이 제시한 목표기금

-
- 4) 산출기준은 상환기금에 납부하는 특별보험료 산정이나 예금보험기금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산출기준에 요율을 곱하여 정해지는데, 상환기금은 0.1%를 적용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은 은행권 0.1%, 증권 0.2%, 보험권 등에는 0.3%의 요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보험권은 “0.3% × 책임준비금”의 예금보험료와 “0.1% × 책임준비금”의 특별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다.
 - 5) 세계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일반적 산출기준이나 책임준비금을 적용하는 프랑스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국내 기금의 문제는 보험요율도 높아 전체적인 예금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제나 보험료차등제도 역시 현행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기금의 적립목표액이 높게 설정될 경우 보험권의 현행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⁶⁾,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차등제는 보험료 부담을 보다 우량한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시장 불안이 조장될 우려도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의 개선을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은 보험요율의 인하나 산출기준의 경감이 예금보험기금 내의 보험권 기금, 즉 보험계약자보호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다른 금융권 기금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론의 제기한다. 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 이외에 보험료차등제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보험료차등제에는 보험권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적정하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권의 예금보험제도는 보험료 산정기준이나 보험료차등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전반적 검토를 토대로 보험권과 기금 간에 논의된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당연하게 간주해 온 예금보험제도의 이론적 타당성이 보험시장의 바탕 위에서 다시 한 번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사에게 적정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 연구

6) 2004년 예금보험공사의 정책세미나에서는 보험권의 목표기금 규모를 2조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김대식 등(2004a).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금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연구는 은행권의 경우 Garcia(1999, 2001)⁷⁾, 보험권의 경우 Yasui(2001)가 대표적이다. 국내의 연구로서는 이승철(1999), 이민환 등(2004), 이순재(2005)가 세계 여러 나라의 현황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승철(1999)은 1998년까지의 보험보증기구를 포함한 보험권의 예금보험제도와 국내외 은행권 및 보험권의 예금자보호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민환 등(2004)은 은행권과 보험권은 물론 증권분야의 예금보험제도를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순재(2005)의 경우는 여러 나라의 비교와 함께 통합기금 내에서 보험권 기금이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가를 예금보험료 평가와 기금간 상호보조의 존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장치들 중에서 기금에 의한 보호만을 다루면서 보험권, 또는 은행권과 보험권 등의 제도 비교에 한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해외 연구들도 주된 초점은 역시 기금에 맞춰지고 있지만, 대체장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거나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Garcia(1999, 2001)의 연구가 세계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예금자보호기금들을 비교한 것이라면, 세계 각국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들을 비교한 자료는 Yasui(2001)의 연구에 나타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연구를 종합할 경우, OECD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9개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금의 전형적 특성은 Moysey(2001)에서 살펴볼 수 있고, 보험권과 어떻게 다른지는 Yasui(2001)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Yasui(2001)는 보험권과 은행권이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서부터 근본

7) Garcia(1999)의 연구 등을 토대로 은행권 예금자보호기금의 전반적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한 자료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2001) 참조.

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NAIB(1988)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대공황을 계기로 출현한 은행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달라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보다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염두에 두고 은행 살리기에 우선하는 예금자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 Skipper 등(1997)도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비교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은 시스템리스크 방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금의 필요성에서부터 보험권과 은행권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한 국내 연구에는 김형원 등(2005)이 있으나, 기금 간 존재 이유의 차이가 어떻게 각 기금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리전개가 없다. 그 때문에 기금의 독립적 운영, 보험료 산정기준의 조정, 보장한도 하향 조정, 보험요율의 차등, 사후각출 또는 적정기금 조성 등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대안들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기금의 틀에서 접근한 김대식 등(2004a, 2004b)은 신용리스크모형을 이용하여 은행권의 목표기금 규모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보험권에 준용하여 목표기금 규모를 책임준비금 대비 1.478%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립률을 따를 경우, 보험권은 약 2조원 내외의 목표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규모 추정은 손실분포의 추정을 전제로 부도확률을 이용한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최대손실가능금액을 도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만큼 여러 가정과 전제에 대한 타당성과 데이터 적정성에 아직은 보완의 여지가 많은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기금에 대해서 전선애(2002)는 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기시정조치 등 시장규율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수록 목표기금의 규모는 최소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이번 연구는 현행 예금보험기금의 존속을 전제로 기금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는 기금 설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기본 전제들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보험권에서 보호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성에서부터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보호기금(policyholder protection funds)을 중심으로 기금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설계와 운영의 원칙, 그리고 실제 운영 현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OECD 회원국들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영 현황과 통합 시장 EU가 각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들에서 국제적으로 시행되거나 추구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보편적 특성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보험권에서 예금보험기금이 필요한 논거들을 평가하고, 제Ⅲ장에서는 EU와 OECD에서 나타난 기금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원칙과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실태와 노정된 문제들을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평가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전반적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보험사들의 데이터를 근거로 제Ⅴ장에서 제시된 개선방향에 따른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역할과 특성

1. 보험사 지급불능과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의 목적은 위험으로부터의 보장(security)이다. 그런 까닭에 위험 보장이라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가 판매자인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보험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 대한 계약자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때문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법규를 통해 누가 보험상품의 판매와 인수를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여 보험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⁸⁾.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의 변화다. 시장의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정부규제의 완화와 시장규율의 강화로 보험시장은 일부 보험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경쟁 시장으로 변하였고, 실패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⁹⁾.

완전한 시장규율체제라면 상품을 구매한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시장은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행권의 Basel II나 보험권의 Solvency II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금융기관을 언제나 피해가는 소비자나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을 방치하는 감독당국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보험사에 대해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8) Skipper 등(1997), p.4.

9) 정운찬(1999), p.8, pp.78-81. 참조.

목표로 경영정상화(rehabilitation) 조치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지만, 지급 불능에 대한 최후 수단은 인수합병 또는 계약의 전부 이전이나 보험회사의 취소 등을 통하여 보험사를 해산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¹⁰⁾,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호는 크게 청산절차 안에서의 보호와 청산절차 밖에서의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¹⁾. 전자가 대다수 나라들의 보험권에서 채택되고 있는 보호 형태이지만¹²⁾, 보험계약자보호기금(policyholder protection funds)¹³⁾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청산절차 안에서 “우선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는 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다¹⁴⁾. 보험계약자의 신분이 파산법령에서 최우선 순위 채권자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조세당국, 사회보장당국, 파산신청자의 대열에 속하는지가 우선적 대우를 받고 있는가(preferential treatment)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할 때,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책임준비금 또는 전체 자산에 한정하여 해당 지위나 차순위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¹⁵⁾, 일부 나라에서는

10) 보험사 구조조정과 청산절차에 대해서는 이성남 등(2003) 참조.

11) Yasui(2001), pp.303-304.

12)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의 사례를 보면, (1) 보험사 스스로(터키 제외), (2) 감독당국(스위스 제외)이나 (3) 채권자가 청산을 요구하는 형태가 있는데, 대다수 나라들의 경우 최종 청산 결정은 감독당국에서 내리고 있다. (3)의 형태를 허용하는 나라들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이 있다. Leflaive(2001).

13) 보험권에서는 흔히 보험계약자보증기금(policyholder guarantee scheme)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 또는 보호기금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이런 기금에는 보험사가 다루는 모든 종목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금(general fund)이지만, 때로는 특정 종목만을 보장하는 특별기금(special fund)도 있다. 본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금은 일반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4)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는 보험감독의 핵심원칙에서 보험사 청산 및 퇴출과 관련하여 “보험사 지급불능이나 청산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에 높은 우선권을 법에서 부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ICP No.16). IAIS(2003).

15)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특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캐나다, 프

보험계약자를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¹⁶⁾.

한편,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형태(ex-ante funding or pre-funding type)와 보험사의 사후적 지급능력에 의존하는 형태(ex-post funding or post-funding type)가 있다. 어느 경우든 이들 기금들은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하거나 여유 있는 보상한도를 설정하여 보험계약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면서도 얼마간의 손실을 기금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운영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보험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도 있다¹⁷⁾.

그런데 보호기금은 일반적으로 시장 원리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상품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지우는(let the buyer beware) 대신 기금이 보험금 지급을 보장할 경우 구매자에게는 보험사를 모니터링하고 선별하려는 동기가 약해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나타난다. 또한 재무건전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기금은 부실한 보험사는 기금에 남으려 하고 건전한 보험사는 탈퇴하려는 유인이 커지는 일종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선택(anti-selection)에 직면하게 되고,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도 커질 수 있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으므로 감독당국의 규제는 물론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제 기금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보호기금이 보험권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이유를 보호기금의 일반적인 존립 근거와 순기능 및 역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보험시장에 투영해보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터키, 멕시코, 미국, 한국 등은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Leflaive(2001).

16)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 Leflaive(2001).

17) Skipper(1997), pp.38-39. 참조.

2. 보호기금의 필요성과 역기능 보완

가. 보호기금의 필요성¹⁸⁾

보호기금이 개인을 포함한 비전문적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금 존립의 첫 번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에게 신용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채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보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지 않은 소비자에게 일반 기업보다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보험사 평가와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어떤 산업보다도 커서 규제와 감독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니즈도 큰 분야이다. 그런데 강력한 규제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파산하게 될 경우 비전문적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논거는 어느 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들은 재무적 손실을 겪게 될 것이고, 이 때 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보험소비자들로서는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해지쇄도(insurance run)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이며, 금융권 보호기금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장 보편적인 논거이다.

그러나 두 번째 논거는 은행권 보호기금의 필요성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보험권 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Skipper 등(1997)은 기금의 정당성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즉 지급불능사태가 인출쇄도(bank run) 등에 의하여 산업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험권보다는 은행권에서 크

18) 본문의 내용은 Yasui(2001)와 Moysey(1998)의 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게 부각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¹⁹⁾. 이에 대하여 Yasui(2001)는 보험계약자와 예금자, 보험사와 은행의 차이를 들어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²⁰⁾. 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예금자는 애초에 약속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거나 미래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기는 하지만, 은행이 파산할 경우 재빨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렇듯 은행의 파산은 파급효과가 커서 즉각적으로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험상품의 중도해지는 금전적 손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를 전가하지 못하는 손실이 따른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예금자처럼 보험사로 쉽게 달려가지 못하며, 보험사로서도 유동성 확보에서 은행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해지쇄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보험사의 파산은 일단 보험계약자가 보유 리스크를 보험사로 전가하는 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해 사회 전반의 리스크관리가 흔들리는 상태가 되며, 이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긴 터널을 거쳐서 결국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²¹⁾. 이러한 반론은 보호기금 존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지급불능의 파급효과(contagion effect)에 있어서 보험권과 은행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²²⁾ 예금자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서

19) Skipper 등(1997), p.39. 이와 관련 ‘예금에 대한 보험(deposit insurance)’과 ‘보험에 대한 보증(insurance guaranty)’이라는 표현으로 차이가 언급되기도 한다. 즉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자의 인출쇄도 유인을 감소시키고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줄이려고 보험 원리를 도입한 것이지만, 보험은 시스템리스크보다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우선하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원 등(2005), pp.24-30. 참조.

20) Yasui(2001), p.307.

21) 현대 경제는 각종 질병, 사고 등에 대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기능 중 많은 부분을 정부와 민간부문(민영보험)이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사 파산이 곧바로 정부의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지만, 점차 사회보장 체계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터널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22) 이는 나중에 논의할 적립기금의 규모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은행과 보험 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된다.

도 뚜렷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예금자보호기금은 설치하고 있어도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나,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대다수 나라들에서도 은행권과 보험권의 기금이 전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의 반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²³⁾.

세 번째 근거는 보호기금이 부실 보험사에게 자연스런 퇴출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데 있다. 신속한 처리로 부실 보험사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보호기금의 존재는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앞의 논거들보다 설득력이 있다. 보호기금은 경쟁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부실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을 돕는다. 보험사가 퇴출될 때, 보험계약자들은 퇴출 보험사에게 전가하였던 리스크에 또 다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또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존과 동일한 보험상품을 보다 비싼 값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보호기금은 퇴출 보험사와의 기존 계약을 지속시켜주거나 현금금(cash value) 지급으로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상당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

더구나 기금이 없거나 빈약할 경우, 감독당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험사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규제유예(regulatory forbearance) 경향이 있다는 것은 보호기금의 필요성, 특히 적정 수준의 기금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²⁴⁾. 대형 보험사의 경우 피해 보험계약자의 수도 매우 많고 그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 이에 따른 감독당국의 규제유예 현상은

23) OECD의 경우 2001년 현재 30개 회원국 중 9개국만이 보험권에서 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국과 영국만이 여러 금융권의 기금들을 통합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OECD(2001), Garcia(2000). 자세한 내용은 제II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4) 전홍택·안영석(2001), pp.5-6.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처리에는 어차피 보호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후적 처리로 족하다는 기금 무용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송홍선(2004).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표현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IMF 구제금융기를 전후로 국내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 사례가 드물지 않다²⁵⁾. 감독당국의 조치가 계약자 보호보다 부실 보험사 회생에 힘을 쏟게 되면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기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영역 간 겸업화(financial convergence) 추세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과 보험이 상호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교차판매 등이 증가할 경우 영역 간 공정경쟁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도 보호기금을 갖춘 금융권의 금융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기금의 안전망에서 보호받을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미래 금융시장의 전개를 고려할 때 상호 접점이 많은 금융권 간에, 특히 생명보험과 은행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논거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논거들, 즉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 보호, 지급불능 위기의 확산 차단, 부실 금융기관 퇴출 지원과 경쟁시장 유지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도 그 존재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논거들로 열거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논거들이 금융권마다 가지는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지급불능 위기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논거는 보험권에서는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기금 설치의 정당성 또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일단 보험권에 기금이 설치된 후의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기금의 결함을 보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느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호기금의 존재로 인한 역기능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보호기금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보완이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짚

25) ‘대마불사’는 미국 금융감독에서도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었다. 실제로 1984년 컨티넨탈일리노이은행이 영업을 지속하면서(open bank assistance)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와 1998년의 롱텀캐피탈(LTCM)에 대한 구제금융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송홍선(2004). 보험권 사례들은 Leflaive(2001), EC(2002) 참조.

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의 각종 시장규율 강화 조치들을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나. 기금의 역기능과 보완수단

모든 보험제도에는 정보를 소유한 사람과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대리인 문제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데, 이러한 문제는 예금보험기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기금이라는 금융안전망이 도입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 심지어는 감독당국에게서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표 11-1>참조). 보호기금이 설치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가 지니고 있는 리스크와 상관없이 가장 값싼 보험상품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보험사 역시 기금가입 이전보다 리스크 인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자산운용에서도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보험권은 물론 은행권에 내재된 특성이기도 하거니와,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실해진 보험사와 해당 보험계약자가 감독당국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금의 존재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금 설치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가, 어떻게 유인부합적인(incentive compatible)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²⁷⁾. 이에 따라 완전보장 대신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손실을 분담하는 부분보장, 보험사의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적기시정조치, 보험료차등제 등 기금의 역기능을 줄이려는 여러 장치들이 예금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26) 전홍택, 안영석(2001).

27) Yasui(2001), p.6.

< 표 II-1 > 보호기금의 역기능과 해소방안

역기능	내용	보완책
도덕적 해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 선정 태만 2. 기금 투명성 부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시적 보호기금제 2. 부분보장제도 3. 보장 범위와 한도 명시 4. 적기시정조치 5. 신속한 부실 처리
역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적인 기금 가입 2. 일률적 보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가입 의무화 2. 보험료 차등화
대리인 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적, 감독상 포로 (political, regulatory capture) 2. 기금부족 따른 정리지연 3. 감독기관과의 이해상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 2. 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 배제 3. 감독기관과의 협력 4. 적정 수준의 기금 확보

자료: 전홍택·안영석(2001), p.6.

한편, 보호기금의 재원은 기금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각출금(예금보험료)으로 조달되므로 기금의 존재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이처럼 보호기금의 존재는 보험료 덤핑과 준비금 적립 소홀 등으로 실패한 보험사가 초래한 손실을 건전한 보험사들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부실한 보험사들의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보호기금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는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재무건전성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금의 가입이 보험사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건전한 보험사는 기금에서 탈퇴해 버리고 부실한 보험사만 기금에 남게 되는 이른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법령으로 보험사들의 기금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재무건전성에 따른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하여 역선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기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의 재무 부담은 가장 큰 이슈의 하나이며, 세계 보험권의 경우 적립할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거나 사전

적립부담이 미미한 사후각출기금을 선택하고 있다.

때때로 보호기금 여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은 서로 다른 나라를 본국으로 하는 국내외 보험사들 간의 불공정 경쟁 논의로 확대되기도 한다. 즉, 안전망을 지원하는 나라의 보험사는 안전망이 없는 나라의 보험사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역외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논거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망이 있음으로써 보험소비자를 유인하는데 더욱 유리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므로 그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대비하여 보호기금에서는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호기금이 정치권이나 규제감독당국에게 종속(political or regulatory capture)되어 부실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부실 규모가 더욱 커지는 일이 일반적이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오는 폐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행 통합기금은 보험계약자의 이익보다는 예금자의 이해관계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기금이 정치와 감독은 물론 은행권의 포로(banking capture)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금의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지배구조, 시장 감시 및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감독기능과의 협조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금 설치에 따른 역기능의 보완은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통합기금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즉 실질적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된 필요성 내지 순기능과 역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보호기금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이 점에서, 유럽연합(EU)이 2005년 1월에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관련하여 역내 회원

국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원칙들은²⁸⁾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EU가 제시한 원칙은 최소한의 공통 기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25개 국가들로 이루어진 경제연합체라는 EU의 특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III장에서는 구체적인 EU의 원칙은 무엇이며, 그러한 원칙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28) EU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담은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하고, 2004년 11월까지 8개 회원국과 유럽보험사연합(CEA) 및 독일보험협회(GDV)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2005년 1월 초안을 제시하였다. EC(2004, 2005) 참조. 한편, EU는 은행권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지침(94/19/EC)과 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한 지침(97/9/EC)을 제시한 바 있다. EC(2002).

Ⅲ.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추세

1. 보호기금 설계와 운영에 대한 일반 원칙²⁹⁾

가. 기금의 설치 의무와 기금 분리 원칙

25개 회원국을 보유한 EU가 보험계약자보호기금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에게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은 각 회원국이 하나 이상의 보호기금을 보유할 것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기금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 지급불능을 모두 보장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상호 보조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보호기금 설치 원칙은 EU가 역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보호기금의 설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은행의 예금자보호기금과 달리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EU의 경우에도 보호기금을 보유한 나라는 25개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불과하다³⁰⁾.

유럽을 포함하여 지역적으로 전세계에 걸쳐있는 OECD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호기금을 가진 나라는 9개국에 불과하다³¹⁾. 또한 생명보험기금 또는 손해보험기금으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EU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호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³²⁾. 또한, 일반기금을 보유한 대다수 나

29) 본문의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 on Internal Market DG의 2004년 10월과 2005년 1월의 초안이 기초가 되고 있다. EC(2004, 2005) 참조.

30) 물론 특정 종목의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수 있다. EU의 경우 제3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배상책임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설치를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금 형태의 보호기금을 가진 나라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31) 나머지는 특별기금(special fund)만을 운영하고 있다. Yasui(2001).

라들은 과거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일반기금 형태의 보험 계약자보호기금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³³⁾.

나. 비전문적 보험계약자 보호와 계약의 연속성 유지

EU는 모든 계약자들이 동일한 보장 수준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보장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보호기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소비자 또는 소규모기업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제3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원수보험에 관한 지침(2002/83/EC의 제2조)에서 정한 보험계약과 그 운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채무의 일부 요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 역시 포함된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EU는 보장 대상을 보험계약자로 제한하지 않고 보험수익자, 제3의 피해자로 확대하고 있지만, 보험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비전문적 보험 소비자의 범주로 한정하고 있다³⁴⁾. 특이한 것은 이러한 보험소비자의 범주에 소규모 기업도 고려되고 있다는 점인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보험료 평가 능력에서 일반 보험소비자와 별 차이가 없는 기업이라면 보호기금에서 보호되어야 할 소비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2)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분리정책에서 연유한다. 유럽에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겸영회사는 두 분야 간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분리하도록 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겸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Skipper 등(1997), p.23.

33) Yasui(2001), p.312.

34) 여기서 소비자란 EU의 지침, 93/13/EC와 2001/31/EC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자를 말하는데, 자기 전문영역 또는 직업영역 이외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최근 일본의 보호기금 개정안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2004).

소비자 범주에 들어가는 기준은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되며³⁵⁾, 그 이외의 기업들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의제된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기준으로서 “대형 리스크”³⁶⁾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표 III-1> 참조).

< 표 III-1 > EU의 보호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장 제외	내 용
대형리스크	철도, 비행기, 선박, 항공/선박배상과 관련된 배상책임
전문적 소비자	전문영역의 소비자들과 관련된 신용 및 보증보험
일반 배상책임	화재, 재물손해, 일반 배상책임
일반 기업	기타 손실의 경우 소규모 기업 이외

한편, EU는 보호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기금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되었듯이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특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계약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상품 등에 대한 니드는 가장 크지만 보험사의 판매 제한이나 매우 비싼 보험료로 인해 이들 상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져 보호기금에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수준의 일시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5) 소규모 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업의 자산 규모와 순매출 상당액 (balance sheet total and net turnover), 그리고 평균 종업원 수가 제시되고 있으며, EU에서 권고하는 가장 넓은 범주의 기준은 자산규모 6.2백만 유로, 순매출 12.8백만 유로, 종업원 수 250명 이하의 기업이다. EC(2005).

36) EU지침; 73/239/EC, 88/357/EC.

다. 손실 분담과 부분보장 원칙

EU는 보호기금이 당초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90%만 지급하는 부분보장(co-insurance)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에게도 부실의 책임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를 선택한 보험계약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수요 측면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만, 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여 보험금의 100% 지급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법에서 의무화한 강제보험의 보험금이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부분보장 원칙을 적용 받는다면, 제3의 피해자 등은 법령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들 피해자는 특정 보험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해당 보험사에 대해 청구권을 갖게 비자발적 채권자(involuntary creditor)라는 점에서도 부실의 책임을 분담할 명분도 약하다³⁷⁾. 따라서 이러한 제3의 피해자들에게는 청구권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3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부분보장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다.

37) 이 때문에 EU에서는 일반기금 형태의 보호기금 설치 원칙을 제시하기 이전부터 의무가입의 자동차배상책임 특별기금(special fund)의 설치를 지침(Second Council Directive of 30 December 1983)으로 정한 바 있다. Leflaive(2001).

2. 세계 각국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현황

가. 소수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전세계 보험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OECD 30개 회원국들의³⁸⁾ 보호기금 설치와 운영 현황은 은행권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전체 30개국 중에서 뉴질랜드와 호주를 제외한 28개국이 명시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권에서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30개 회원국 중 9개국에 불과하다³⁹⁾.

물론 특정종목의 기금 운영 사례도 있지만, 이는 의무가입 자동차배상책임 등 매우 제한된 보장 범위의 특별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기서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으며⁴⁰⁾,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예금보험제도, 즉 일반기금 형태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나 예금자보호기금의 운영과는 차이가 크다. 일반기금은 자동차배상책임 등 의무보험과 함께 가입이 자유로운 임의보험까지 보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 보험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사 등 전문 보험사의 보험상품은 기금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독일, 이태리를 비롯한 대다수 나라들은 예금보험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9개국이다. 또한 기금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표III-2>참조). 이는 OECD 회원국 절대 다수가 예금자보호기금을

38) Swiss Re(2005). OECD 회원국은 19개 EU 회원국과 유럽의 비EU 국가들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중미의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EU는 19개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9) Garcia(2001), Yasui(2001). 9개국의 상당수는 금융위기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본문의 논의는 9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40) 자동차배상책임 이외에도 사냥보험기금(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기금(프랑스, 이태리, 일본, 포르투갈) 등이 있다. Leflaive(2001).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다.

< 표 III-2 > OECD 회원국의 보호기금 보유 현황 : 2001년 기준

OECD 회원국	은행 기금	보험 기금	보험기금의 형태	비 EU
1 호주	-	-	-	√ ¹
2 오스트리아	● ²	-	-	-
3 벨기에	●	-	-	-
4 캐나다	●	◎ ²	생명 / 손해	√
5 체코	●	-	-	-
6 덴마크	●	-	-	-
7 핀란드	●	-	-	-
8 프랑스	●	◎	생명	-
9 독일	●	-	-	-
10 그리스	●	-	-	-
11 헝가리	●	-	-	-
12 아이스랜드	●	-	-	√
13 아일랜드	●	◎	손해	-
14 이태리	●	-	-	-
15 일본	●	◎	생명 / 손해	√
16 한국	●	◎	통합 기금	√
17 룩셈부르크	●	-	-	-
18 멕시코	●	-	-	√
19 네덜란드	●	SPC ³	-	-
20 뉴질랜드	-	-	-	√
21 노르웨이	●	◎	손해 / 신용	√
22 폴란드	●	◎	생명	-
23 포르투갈	●	-	-	-
24 슬로바키아	●	-	-	-
25 스페인	●	CLEA ³	-	-
26 스웨덴	●	-	-	-
27 스위스	●	-	-	√
28 터키	●	-	-	-
29 영국	●	◎	통합 기금	-
30 미국	●	◎	생명 / 손해	√

주: 1. √: EU 회원국이 아닌 OECD 회원국.

2. ◎(또는 ●): 보험계약자보호기금(또는 예금자보호기금) 보유.

3. 네덜란드는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여 계약자를 보호, 2000년 생명보험 기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스페인은 공적기구인 보험사업자청산위원회를 통해 계약자 이익을 보호.

자료: Garcia(1999, 2001), Yasui(2001), Leflaive(2001), EC(2002)를 참조하여 작성.

보호기금을 보유한 9개국 중에서 프랑스와 폴란드는 생명보험기금만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는 손해보험기금만을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손해보험기금 외에 신용보험기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 5개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기금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일본, 미국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각각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영국은 여러 기금들을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⁴¹⁾.

나. 전문 보험계약자 배제와 충분한 보상 체계

기금을 보유한 OECD 9개국의 보호기금들은 대체로 보호 대상에서 기업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대형 기업들은 보장 대상 보험종목의 제한이나 보상 한도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보호기금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제외되고 있다⁴²⁾. 일반적으로 기업들을 위해 설계된 보험상품들은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해상보험과 재보험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나라들은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아일랜드에서는 기업이 자연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는 청구권자에서 배제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기업은 의무보험에 한해서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과 파트너십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금을 관장하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보호 대상에 소규모 기업을 포함시키고, 대형 파트너십을 제외하고 있다⁴³⁾. 이는 비전문적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EU의 가이드라

41) 영국의 통합기금이 FSCS라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은행(1), 보험(2), 증권(9)의 3개 대그룹, 12개 소그룹 기금들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는 복수기금형이라면, 국내 통합기금은 하나의 관리주체가 은행, 보험 등 5개 기금을 하나인 것처럼 운영하는 단일기금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2) Yasui(2001), pp.313.

43) 소규모 기업의 기준은 순자산이 UKP 1.4M 미만이다. 또한 로이드(Lloyd)에서 인수한 보험은 보장 제외. 로이드는 자체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EC(2002).

인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편, 대다수 기금들이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상에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⁴⁴⁾, 한도 설정에는 크게 금액 한도를 정하는 형태와 청구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다. 전자는 소규모 계약자의 손실을 전액 보장해 주는 반면, 대형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처리비용을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 금액한도를 채택한 나라들로서 캐나다, 프랑스, 미국, 한국 등이 있다.

< 표 III-3 > OECD 회원국 보호기금의 보상 한도

국가		보호기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1	미국	생명 / 손해	USD 300,000 ¹	USD 300,000
2	캐나다	생명 / 손해	CAD 200,000 ²	CAD 250,000 ³
3	일본	생명 / 손해	90% ⁴	90% ⁴
4	영국	생명 + 손해(통합)	90% ⁵	90% ⁵
5	한국	생명 + 손해(통합)	KRW 50M	KRW 50M ⁶
6	프랑스	생명 / -	EUR 70,000	-
7	폴란드	생명 / -	50%, EUR 30,000	-
8	아일랜드	- / 손해	-	65%; IRL 650,000
9	노르웨이	- / 손해, 신용	-	n.a. ⁷

주: 1. 환급금 기준으로는 은행과 동일한 USD 100,000. 한편, 유일하게 사전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뉴욕주의 보상한도는 USD 500,000임.

2. 환급금 기준으로는 은행과 동일하게 CAD 60,000.

3. 1사고당 기준.

4. 자동차, 지진보험은 100%보장, 계약에 따라 생명보험은 85~90% 보장.

5. UKP 2,000까지는 100% 초과분은 90% 보상; 단, 의무보험은 100% 보장.

6. 5천만원 초과분은 손해보험협회의 제3자배상책임기금에서 보상.

7. 무제한에서 한도제한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료 없음.

자료: Yasui(2001), 이민환 등(2004), 이순재(2005)를 참조하여 작성.

44) 노르웨이의 경우 보상한도가 없었으나, 은행·보험·증권위원회는 주택보험에 대한 100%보상을 제외하고는 90%의 비율보상과 NOK 20M(약 240만 유로 상당)의 금액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Yasui(2001), p.314, 각주11.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청구액의 일부분만 지급하는 비율보상은 계약자 모두에게 보험사 선택에 따른 손실 분담을 요구하며, 시장규율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비율보상의 경우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청구액의 90%를 보상 한도로 하고 있으나,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100% 보상하고 있다⁴⁵⁾. 전체적으로는 보상한도에서 혼합형이 늘고 있는데, 아일랜드와 폴란드,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이 금액 한도와 비율 보장을 혼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1년 통합기금이 등장하면서 2,000파운드까지는 100% 전액보장을 도입하여 비율 한도에 소액계약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 경우 2,000파운드 초과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90% 보장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의무가입의 자동차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100% 전액보장을 적용하고 있다⁴⁶⁾. 폴란드와 아일랜드는 비율과 함께 최고 보상한도를 도입한 사례다.

한편,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기본 목적이 보험사 파산에 따른 계약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상품인 생명보험의 경우 대다수 나라에서는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에게는 지금 당장의 현금보상(payoff)보다는 계약을 지속할 경우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계약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사가 있을 경우 기금에서 재무적 지원을 제공한다⁴⁷⁾. 물론 여기에서도 부분보장 원칙은 적용되고 있다. 계약이전 등에서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급

45) 일본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호대상에 소규모 기업을 포함하고, 사고발생시 보장, 즉 파산 후 3월 이내의 보험금은 100% 보장하되 환급금과 3월 이후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80%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시 중에 있음. 일본 금융청(2005).

46) 은행의 경우도 동일 보상 체계를 적용하지만, 무제한인 보험과 달리 최고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즉 2,000파운드는 100% 보장되고 최고 33,000파운드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90%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한도는 31,700파운드가 된다. 이민환 등(2004), pp.23-25.

47) 기금의 지원은 파산선고 1건당 생명보험은 JPY 2000억, 손해보험은 JPY 300억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전출연, 자산매입, 채무보증, 자금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원 등(2005), p.47.

부를 기금의 보장한도까지 줄이거나 예정이율 등의 삭감으로 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려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⁴⁸⁾. 영국과 캐나다의 생명보험기금에서도 계약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혼합형 기금적립방식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가입 보험사들로부터 각출금(예금보험료)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출금을 정기적으로 거두어 기금을 적립하고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과 보호기금 내에 자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고⁴⁹⁾ 필요한 때에 각출금을 거두는 방식이 있다. 전자가 사전적립방식이고, 후자가 사후각출방식이다. 사전적립방식은 보험사의 지급불능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 보험사 처리에 유리하다. 또한 각출금을 납부하는 보험사들이 미래 재무 부담을 예측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존재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기금이 보유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금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도 있는 단점도 있다. 한편, 사후각출방식은 실제 파산이 있기 전까지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없다는 점과 보험사가 자금을 내부 유보하는 효과를 통하여 자금 이용도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급불능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핵심 기능이며, 특히 사후각출방식에서 중요하다.

48) 일본 금융청(2004).

49)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호기금(protection fund)’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증기구(guarantee scheme)’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한편, 김형원 등(2005)은 은행권과 보험권의 기금을 비교하면서 은행권의 기금이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예금에 대한 보험(deposit insurance)라면, 보험권의 기금은 공적 안전망의 일부라기보다 계약자 보호가 1차적인 목표인 보험에 대한 보증(insurance guaranty)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형원 등(2005), p.28.

< 표 III-4 > OECD 회원국의 기금 운영 현황 (200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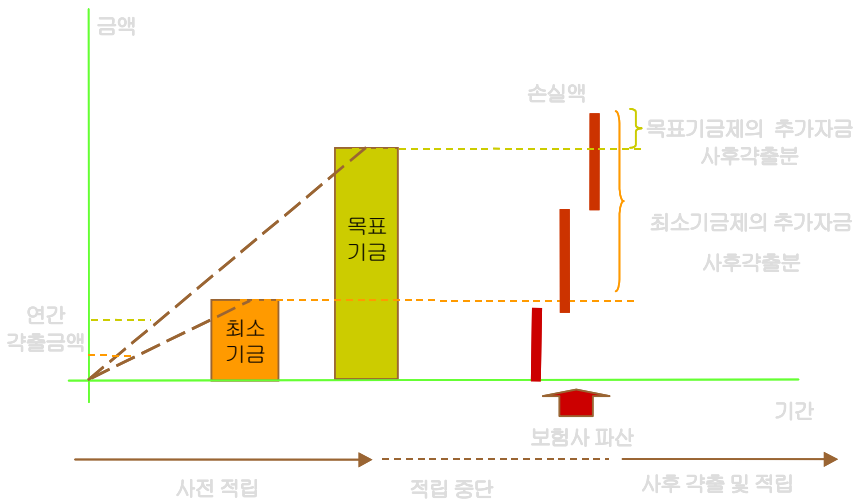
국가	시장 ¹	보호기금	적립 ²	목표기금	산출/배분기준	요율 ³
9 미국 ⁴	1	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	수입보험료	2.0%
		손해보험	<input type="checkbox"/>		보유보험료	2.0%
8 영국	3	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5	수입보험료	1.0%
		손해보험	<input type="checkbox"/>		보유보험료	0.8%
3 아일랜드	17	손해보험	<input type="checkbox"/>	-	수입보험료	2.0%
7 폴란드	31	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	n.a	n.a.
1 캐나다	7	생명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⁵	요구 자본 ⁶	1.33%
		손해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⁵	수입보험료	0.75%
4 일본	2	생명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⁷	보험료와 준비금 고려 ⁸	-
		손해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⁷		
2 프랑스	4	생명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⁶	책임준비금	0.05%
5 한국	8	통합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보험료와 준 비금의 평균 ⁹	0.3%
6 노르웨이	26	손해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¹⁰	수입보험료	1.0%
		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¹⁰	수입보험료	

- 주: 1. 2004년 세계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기준 점유율. OECD 전체는 92%.
 2. 기금의 적립방식: 사전적립, 사후각출; 일부 사전적립(최소자금)
 3. 사전각출 비율 또는 사후각출 한도.
 4. 뉴욕주는 유일하게 사전적립방식이며, USD 2억의 목표기금을 설정함.
 5. 사전적립형 최소기금 설정. 생명보험은 CAD 1억, 손해보험도 특별보험료 각출. 영국도 대기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불분명하여 제외.
 6. 요구자본은 책임준비금 등이 고려되기는 하나 개념이 다름.
 7. 목표기금은 생명보험 JPY 4,000억, 손해보험 JPY 500억.
 8. 적립목표액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 분담금을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규모를 고려하여 배분. 2001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수보대비 0.197%, 책임준비금 대비 0.012%, 손해보험은 수보대비 0.038%, 책임준비금대비 0.007%.
 9. 목표기금은 EUR 2억7천만, 그 중 일부는 보험사 내부유보 형태로 적립.
 10. 직전년도 수입보험료와 당년도말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자료: Yasui(2001), Leflaive(2001), 이민환 등(2004), 이순재(2005), Swiss Re(2005)를 참조하여 작성.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한국이 사전적립방식에 속하는 반면,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는 사후각출방식에 속한다. 사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 목표기금제도가 병행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⁵⁰⁾. 목표기금제도는 사전에 적립할 기금의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가 차면 더 이상 기금을 적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도 이후부터는 사후각출방식과 차이가 없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후각출방식에 속하는 캐나다 등은 최근 사전적립 요소를 가미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최소기금(minimum fund)을 보호기금 내에 사전 적립하고 있다. 이는 사후각출방식의 단점인 시장 적시 대응력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긴급자금 성격으로서 쌓는 최소한의 기금이다(<표Ⅲ-4> 참조).

< 그림 Ⅲ-1 > 목표기금과 사후각출



전체적으로 보면, 보호기금 적립방식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 사전적

50)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유일하게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2억 달러의 목표기금을 설정하고 있다.

립방식의 목표기금, 사후각출방식의 최소기금과 같이 일정 수준의 자금을 보유하고 그 이후에는 적립을 중단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출을 재개하는 혼합형 적립방식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그림 III-1> 참조).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일본, 노르웨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생명보험보호기금은 2억7천만유로의 목표기금을 정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매년 책임준비금의 0.05%를 각출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그 적립액의 일부를 보험사가 내부에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생명보험보호기금이 4,000억엔, 손해보험보호기금이 500억엔을 목표기금으로 하여 매년 1/10 상당액을 보험사들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각출금의 배분은 보험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된다⁵¹⁾. 역시 사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손해보험기금은 3년간 경과보험료의 1.5%를 목표기금으로 정하고, 보험사들은 매년 수입보험료의 1%를 각출하고 있다.

사후각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캐나다는 사후각출방식에 일부 사전적립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영국, 아일랜드, 미국⁵²⁾ 등은 수입보험료의 1% 또는 2%를 각출 한도로 하는 사후각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생명보험기금(CompCorp)은 1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최소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 수준은 사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목표기금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데, 초기단계의 지급만을 보장하고 지급불능을 처리할 비용은 그 후의 평가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각출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

51) 보험요율을 보면, 2001년 기준으로 생명보험기금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0.012%, 수입보험료의 0.197%, 손해보험기금의 경우는 책임준비금의 0.007%, 수입보험료의 0.03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순재(2005), p.12.

52)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뉴욕주에서도 기금적립 상한을 정하는 목표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규모가 2억 달러에 달하면 각출이 중지되며, 1.5억달러 미만이 되면 부족분을 사후적으로 각출한다. 이승철(1999), p.30. 주48.

다의 손해보험기금(PACICC) 역시 기본적으로 사후각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애초에 보장하지 않았던 미경과보험료(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에 해당)에 대한 보장이 채택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금을 사전적립하고 있다⁵³⁾.

한편, 보험사가 기금에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산출 기준은 크게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으로 대별되고 있다. 수입보험료가 유량(플로우) 기준의 지급능력 척도라면 책임준비금은 저장(스톡) 기준의 지급능력 척도이므로 산출 근거로서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모두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사후각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대체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전적립방식인 경우 수입보험료 외에 책임준비금도 적용되고 있다. 사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프랑스의 생명보험기금은 산출기준으로서 책임준비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르웨이의 손해보험기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생명보험기금과 손해보험기금에서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기금제도가 병행되고 있는 사전적립방식의 산출기준과 사후각출방식의 산출기준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표기금제도가 병행되는 사전적립방식의 산출기준은 사전적 척도가 아니라 목표로 정해진 기금 규모를 보험사들 간에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에 그치고 있어서 사후각출기준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가 보험사 파산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금규모를 추정하여 이를 보험사들에게 사전적으로 배분하는 데 반해, 후자는 보험사가 파산한 후에 산출된 필요 자금을 보험사들에게 사후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⁵⁴⁾. 그러나 보호기금의 적립방식에 있어서 일정 자금수준까지는

53) Yasui(2001).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서비스보상기구는 은행기금 등에서 최소기금과 유사한 비상기금(standing fund)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이민환 등(2004), p.22.), 여러 기금들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듯하며 2001년 통합에 따른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상시 사전적립자금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사전에 적립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금은 향후 실제로 보험사 파산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각출하는 사전적립과 사후각출의 혼합방식이 국제적 추세임을 감안하면, 초점은 얼마만큼의 기금 규모를 얼마동안 각출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따라서 산출기준에 의하여 보험사별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결정된 요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결정된 금액의 수입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대비 비율로 나타날 뿐이다.

라. 보험사의 기금 가입 의무화

보험사의 기금 가입은 통상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도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물론 자율가입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기금에 참여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6년 이전에는 자율가입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의무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율가입제의 문제는 모든 보험사가 언제든지 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안전망 밖에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금가입 의무화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입이 자유로우면 리스크가 큰 보험사일수록 기금 안에 남으려는 유인이 큰 반면, 건전한 보험사는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크지 않은 기금에서 빠져나가려는 데에서 오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장치가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 의무화는 건전한 보험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기에는 적절한 대책일지 몰라도 건전한 경영을 통해 살아남은 보험사들이 파산한 보험사의 손실을 떠안는

54) 보험료 차별화와 관련하여 사후각출방식에서는 차등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합 적립방식에서는 사전적립분에 대해서 보험료 차등이 가능하다.

부담의 정도를 조절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운영에서는 기금 가입자의 재무 부담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사가 재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기금의 크기 자체를 미리 정해 놓는 목표기금이나 최소기금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

또한, 보호기금은 비영리 조직 형태로 설립되고 이사회 등이 기금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회 구성은 주로 공공부문이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국은 이사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보호기금 이사회의 대다수가 사외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보호기금과 이사회의 자율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사회의 권한은 대체로 운영상 의사결정에 한정되어 있다.

보호기금의 기능도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기금은 법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금의 권한으로 보험사가 지급불능이 아니더라도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호기금의 역할에 대하여 은행권 예금자보호기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가입은 물론 퇴출 심사권을 갖기도 한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방식의 결정, 상시 모니터링과 채권 조사권한 등을 보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권한의 정도에 따라 크게 보험금 대지급 기능 위주의 약형(*pay-box or weak form*)과 약형보다 자율 결정권이 많은 중형 또는 강형(*mild or strong form*)의 보호기금으로 그 형태가 구분되고 있다⁵⁵⁾.

55) 이러한 구분은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경우에는 대체로 약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통합기금을 택하고 있는 영국과 한국도 약형에 속한다. 전홍택·안영석(2001), pp.7-8, Norton(2001).

IV.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

1.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가. 외환위기와 금융권별 기금의 통합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는 1989년 보험보증기금(Insurance Guaranty Fund)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험보증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5천만원의 보상한도를 제공하고⁵⁶⁾, 필요한 재원은 보험사들로부터 매년 수입보험료의 0.1%를 각출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각 금융권의 보호기금들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었고 보상한도도 무제한의 전액보장이라는 한시적 조치가 실시되었으며, 각 기금별 예금보험요율도 비례적으로 인상되는 조치가 취해졌다(<표 IV-1> 참조).

< 표 IV-1 > 기금통합 전·후의 보장한도와 각출금 산출 기준

구 분	~1997.11	1997.11	1998.8	2000.8~	
법률근거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 근거		예금자보호법 (통합)		
보상한도	5,000(보험)/2,000(기타)		무제한	5,000만원	
산출 기준	은행,증권	예금 평잔			
	보험	수입보험료(수보)		준비금 (수보+준비금)/2	
보험 요율 ¹⁾	은행	0.02%	0.03%	0.05%	0.10%
	증권	0.10%	0.15%	0.10%	0.20%
	보험	0.10%	0.15%	0.15%	0.30%

주: 1. 예금보험료 이외에 상환기금에 대한 특별보험요율은 일률적으로 0.1%임.
 자료: 이승철(1999), p.56, 이민환 등(2005), p.54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외환위기를 계기로 각 금융권 기금은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보상

56) 1990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4,389천원(USD 1 = KRW 714)수준을 고려할 때, 1989년 출범 당시의 보험보증기금의 보장한도 5,000만원은 국민소득의 11.4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도를 철폐하고 한시적 전액 보장이라는 긴급조치를 취해졌으며, 보장 범위에서도 보험권의 경우 기존의 개인 보험계약자 위주의 가계성 보험 보장에서 1997년 12월에는 보호 대상이 퇴직보험으로 확대되었고, 한시적으로 일반 보험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보증보험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1998년 4월에는 각 금융권별로 설치 운영되어 오던 보호기금들이 은행권의 예금보험기금으로 흡수되면서 통합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하였다.

그런데 기금은 여전히 출범 초기의 물리적 통합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금융권 간 형평성에 따른 유사한 기준의 일률적 적용을 중시한다. 관리 주체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일률적 기준의 기금운영이라는 단일기금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료 산정, 보상한도 설정, 상환기금의 정부지원금 회수를 위한 소급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모든 갈등을 야기한 일련의 조치들은 금융권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외환위기로 시행된 무제한 보장한도가 2001년 1월에 부분보장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보상한도가 적용되었다. 결국 보험권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금융권의 보상한도가 인상되었다. 더구나 요율 인상은 물론이고 보험권의 경우에만 산출기준도 책임준비금으로 인상되었다. 인상된 산출기준은 통합기금은 물론 상환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험권의 부담은 급증하게 되었다. 또 하나,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은 금융권이나 적게 받은 금융권이나 동일하게 0.1%의 요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적게 받은 금융권이 많이 받은 금융권의 상환부담도 일부 떠안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노출위험과 예금보험료 부담의 불균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기금이 은행권의 예금 잔고에 상응하여 보험권의 산출기준을 수년간 누적된 수입보험료 개념인 책임준비금

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보험료의 증가가 아니라 예금보험에서 보상기준으로 삼는 책임준비금의 크기, 즉 노출위험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보험권의 노출위험은 모든 금융권의 전체 노출위험(예금평잔, 책임준비금 등의 총합)의 18.8%에 불과하지만, 기금적립부담을 나타내는 예금보험료 납부액이 기금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35.8%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전체 노출위험의 73.7%를 차지하면서도 기금적립부담은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 참조)⁵⁷⁾.

< 표 IV-2 >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납부 현황

(단위: 노출규모-십억원, 보험료-억원)

구 분	보험			은행	증권	기타	합계	
	생명	손해	계					
'03년	예금 보험료	2,580 (27.0%)	535 (5.6%)	3,115 (32.6%)	4,775 (50.0%)	312 (3.3%)	1,343 (14.1%)	9,545 (100.0%)
	위험노출 규모	97,680 (14.5%)	19,787 (2.9%)	117,467 (17.5%)	493,649 (73.4%)	15,986 (2.4%)	45,596 (6.8%)	672,698 (100.0%)
'04년	예금 보험료	2,832 (29.8%)	571 (6.0%)	3,403 (35.8%)	4,960 (52.1%)	336 (3.5%)	814 (8.6%)	9,513 (100.0%)
	위험노출 규모	101,333 (15.6%)	21,050 (3.2%)	122,383 (18.8%)	479,977 (73.7%)	15,727 (2.4%)	33,018 (5.1%)	651,105 (100.0%)

자료: 예금보험공사(2005).

57) 보험원리로 보면, 자동차와 비행기를 같은 운송수단이라고 해서 동일한 보험요율 테이블에서 비교하지는 않는다. 리스크 자체가 상이한 대상 간에 보험료 또는 보험요율 비교나 차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권간 차등화도 동일 리스크 척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통합기금은 사실상 단일기금으로 운영되어 온 특성 때문에 본문의 기금간 비교가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위험노출규모와 보험료 부담 간의 역전 현상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보험권의 파산(부도) 확률과 파산 건당 손실규모가 은행권에 비해 높고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해율 방식(loss ratio method)을 이용한 예금보험요율의 적정성 평가에서는⁵⁸⁾ 보험권의 손해율과 비교할 때 은행권의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3 > 보험권과 은행권의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손실 누계(A)	보험료 누계(B)	손해율 지수(A/B) ¹	경험손해 지수	실제요율 지수
은 행	460,019	24,453	18.812	1.00	1.00
보 험 사	91,325	17,077	5.158	0.27	3.00
생명보험	87,690	13,858	6.328	0.34	3.00
손해보험	3,635	3,219	1.129	0.06	3.00
보증 보험	102,500	- ²	-	-	-

주: 1. 2004년까지의 보험금지급 실적을 보험료 수입 실적으로 나눈 것임.
2. 보증보험은 보험보증기금이나 예금보험기금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음.
자료: 이순재(2005), p.49. 참조.

그 결과 손해율 지수는 보험권이 은행권의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준에 설정된 예금보험요율은 손해율 실적에 상응하는 요율조정 조치

58) 본문에서는 손해율 방식을 통하여 기존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순보험료 방식의 평가는 부족한 데이터와 아직은 불안정한 많은 가정을 수반하는 국내 예금보험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험료 평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예정보험요율(expected premium rate)을 전제로 하여 평가기간의 보험료와 보험금 실적을 기초로 손해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요율을 조정하는 방식(loss ratio method)이다. 또 하나는 기존의 요율과는 무관하게 사고빈도(부도확률)와 사고심도(건당 손해액)를 예측하여 향후 리스크에 상응하는 순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net premium method)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1988) 참조.

가 뒤따라야 했다⁵⁹⁾. 그러나 현재의 요율이 설정된 2001년 이후부터 지급까지 보험권의 0.3%와 은행권의 0.1% 요율에는 한 번의 조정도 없었다(<표IV-3> 참조).

다. 금융권간 상호보조와 전문 보험계약자의 보호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험요율의 부적정 이외에도 상환기금의 특별보험요율 결정에서 나타난 상호보조의 문제가 있다. 사고 발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간의 불균형이 나타날 때, 위험이 낮은 가입자는 위험이 높은 가입자의 보험 혜택에 대하여 그 보험료 부담의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⁶⁰⁾. 이는 흔히 상호보조(subsidy)의 문제라고 불린다.

2002년 당시 정부는 예금보험과 관련하여 기금에 투입된 전체 지원금 중 회수불가능 금액을 69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49조원은 시장 불안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시장 안정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이 20조원을 현재 세대(25년간) 안에서 부담한다는 상환계획을 제시하였다⁶¹⁾. 그런데 부담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0.1%의 분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부 금융권의 상환의무가 나머지 금융권에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손해보험권의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환위기의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예금보험기금은 보증보험을 보장함으로써 예금보험의 보호대상이 아닌 전문적

59) 이에 대해 통합기금에서는 은행권의 손해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된 데 기인하는 것이고, 보험권은 아직 구조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 예금보험요율이 적정하여 요율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요율이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에 적용할 요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60) 이순재(2005), p.51.

61) 재정경제부(2002).

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손실은 금융권 전체의 손실이고,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²⁾. 보증보험이 금융권 전체의 손실이라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보증보험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일반 보험사가 접근할 수 없는 독점사업 영역이며, 통합기금 이전의 1989년 보험보증기금에서도 보증보험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보증보험사도 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 보증보험사의 지급불능은 보험시장의 불안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산운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의 지급불능에 따른 손실을 입은 보증보험계약자들은 기금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한 비전문적 보험소비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평가능력을 지닌 금융기관 등 대기업이었다. 근본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험권의 손실로 분류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투명하지 못한 관리방식이다.

라. 기금의 보상 한계와 손해보험협회의 제3자배상책임기금

통합기금은 은행권 예금자의 예금 잔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 환급금에 초점을 맞춘 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본래의 보험계약자 보호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보험계약자의 보장 니드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나, 보험권의 현행 보상한도는 1989년에 책정된 5,000만원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보상 수준은 환급금 측면에서는 예금자로서의 보험계약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⁶³⁾, 위험보장을 위해 보험상품을 구입한 본래의 보험계

62) 2002년 상환대책에서도 보증보험 손실을 보험권 상환부담에서 차감하고 있다.

63) 은행권 통계에 근거할 때, 2001년 부분보장으로의 전환에서도 2000만원 수준이 적정 수준이며, 5,000만원 보상한도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시장규율이 약화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2000).

약자가 보험사고에서 기대하는 보험금으로서는 부족한 수준이다. 보험 계약자는 내가 맡긴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예금이 아니라 “1인은 만일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 돈을 몰아주는 보험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예금자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할 경우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기금, ‘제3자배상책임기금’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동차배상보험은 그 특성상 부분보장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제3의 피해자들은 보험사에 대한 비자발적 채권자들이어서 각 나라들은 제3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받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공동보험의 부분보장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동일 종목에 복수의 기금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 특별기금을 설치한 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경직성이라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단일기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기금에서는 각 금융권 기금 간에 차별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배상책임의 100% 전액보상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기금 내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으로부터 보장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의 제3자배상책임기금으로부터 전액 보장받는 이중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2.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

가. 통합기금은 기금 분리의 원칙 결여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기금의 설치 형태와 운영의 특이성,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의 미흡, 적립방식의 미완성, 예금보험료 평가방식의 특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기금의 형태와 관련하여 국내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통합기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형태로서⁶⁴⁾, 비슷한 형태의 영국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기금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여러 금융권의 기금들을 통합 관리하지만, 기금별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독자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기준으로 금융권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국내 예금보험기금⁶⁵⁾과 형식에서는 같지만,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운영방식이다. 영국은 통합기금이지만 기금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반면, 국내 기금은 기금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금분리 원칙은 특성이 다른 금융권 간의 상호보조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EU는 보험권과 다른 금융권이 아니라 보험권 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 기금 분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EU 보험시장은 분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는 정반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물론 은행과의 겸업도 허용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 EU에서 제시한 기금분리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통합기금은 여러 금융권의 이해가 얽혀 있는 기금들을

64) 2004년 Norton은 국제예금보험기구연합(IADI) 연차회의에서 영국 보험기금을 평가하면서 아직 실험단계의 불완전한 형태라고 언급했다. Norton(2004).

65) 2004년부터 실험기금은 통합기금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 설치되었다. 따라서 현재 통합기금은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상호저축 등 5개 금융권역 기금의 통합체다.

하나의 보상한도와 하나의 요율 척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금 기준으로는 부족한 보상한도 문제는 부분적으로 봉합된 상태이고, 요율과 산출기준의 보험료 산정 문제는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다. 특정 금융권 기금의 부실이 나머지 금융권 기금의 적립과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높아 예금보험기금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기금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모두 기금분리 원칙이 결여된 단일기금형 운영방식에서 초래된 제약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통합기금은 그동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일어난 기금과 금융권 사이의 분쟁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산업의 특성을 높인다는 것은 기금과 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금융권별 기금들의 차별성이 제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채산제와 같은 방화벽은 각 기금의 차별성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장치로서 상호보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리스크가 동일한 그룹 단위를 분명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내 예금보험기금은 기금분리의 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애매한 보호 대상과 부족한 보상 한도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은 “예금 등” 금융상품의 청구권자로 되어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종목과 일부 단체보험 종목만이 인정됨으로써 그 범위가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권 기금의 보호대상이 보다 명시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고, 보호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문적 금융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한도에서도 계약자에게 충분한 보상한도를 제공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저축상품의 범주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함으로써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고에서 받을 보험금 기준의 보상이나, 보

험계약의 연속성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환급금이 아니라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상한도가 설정되고 있으며, 계약이전을 통해 보험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EU는 보험계약의 연속성 중시를 별도의 원칙으로 제시할 만큼 보험권의 특성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사가 지급불능이 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계약이전 과정에서 보험가입금액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가 부실 보험사를 선택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적립목표액 부재

사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사전적립을 채택한 모든 나라가 목표기금을 수반하고 있는 국제 추세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기금적립 방식이 사전적립이건 사후각출이건 간에 대다수 기금들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 보험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않으므로 적립중단 상태 또는 사후각출 상태에 이르며, 자금이 일정 수준 미만이 되거나 부실 보험사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다시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므로 일종의 혼합형 적립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금들은 적립방식과 상관없이 많게는 3,000억원 내외에서 적게는 9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준비금과 수입 보험료를 산출기준으로 병용하고 있는 사례는 국내 기금밖에 없다. 국제적으로는 수입보험료가 일반적 산출기준이며, 예금보험료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에게는 누적 보험료(책임준비금)가 아니라 증가된 보험료(increased premium)의 형태로 전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

적이 많다⁶⁶⁾. 물론 일본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와 준비금을 병용하는 사례도 있고, 책임준비금만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도 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목표기금의 연간 할당액을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프랑스의 경우는 일부 기금을 보험사 내부에 유보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 국내 기금의 운영과 다르다.

보험요율의 경우 산출기준, 목표기금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보험료의 경우 0.8%~2%를 최대 각출 한도로 정하고 있는 반면, 책임준비금을 산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보험요율은 최대 0.05%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보험시장 환경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기금의 예금보험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목표기금제를 도입할 경우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준이 목표기금제의 연간 할당액을 사후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에 한정된다면, 어떤 산출기준을 사용하느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목표기금제의 규모 자체가 더 중요하다.

66) 이순재(2005), p.63.

V.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1. 보상한도와 적립목표액의 추정

가.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예금보험기금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보상한도를 목표 적립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연도말 보험계약자별 해약식준비금 현황, 연간 보험금 지급 실적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의뢰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이루어졌다.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통계의 작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급 이상이 작성토록 하였다. 분석 대상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 5개사(대형사 1개사, 중소형사 4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대형사 3개사, 중소형사 3개사) 등 총 11개 보험사로⁶⁷⁾ 이루어졌다(<표 V-1> 참조).

< 표 V-1 > 분석 대상 및 데이터

	내 용	특 징
분석대상	11개 보험사 - 생보 5개사, 손보 6개사	전체 보험사 대상 의뢰
조사기간	2005.7~2005.8 (약 2개월)	-
자료형태	연별(연도말 또는 연간) 데이터	3가지 형태의 DB자료
작 성 자	관련 책임자급 이상	보험사 기획부 경유

먼저, 손해보험사들과 생명보험사들의 연별 데이터들을 각각 합산한 통계를 손해보험권과 생명보험권 각각의 전체 시장 데이터로 의제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보험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외환위기 이후 안정기

67) 대형사의 기준은 생보사 상위 3개사 기준, 손보사는 상위 5개사 기준임.

에 있으므로 현재의 환급금 분포나 보험금 지급 분포가 향후 수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환급금 데이터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별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으로 구성되었다. 보험금 데이터는 만기환급금을 제외한 사망, 후유장애, 질병 등의 순수한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실적으로 구성되었다.

< 표 V-2 > 보상한도의 추정방법

시나리오	환급금 기준 한도 추정	보험금 기준 한도 추정
데이터	GDP대비 비율	
	환급금 구성 분석	지급보험금 구성 분석
분석	- 계약자 구성비와 금액 구성 비별 보상수준 선택 분석	- 계약자 구성비와 금액 구성 비별 보상수준 선택 분석

보상한도 추정을 위한 분석은 시나리오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별 분석은 ①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보유한 나라들의 GDP 대비 비율을 이용한 해약환급금 한도의 추정, ② 은행권 기준에 상응하는 환급금 기준의 한도 추정, ③ 지급보험금 기준의 한도 추정 등으로 이루어졌다(<표IV-2>참조). 즉, 시나리오별 분석의 1단계는 해약환급금 한도의 조정 단계이며, 제2단계는 지급보험금 한도의 조정 단계로 1단계와 2단계는 독립적인 단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기금의 적정 적립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보상 한도 추정과 동일하게 시나리오별 분석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① 과거 보험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액 등을 적립기금의 적정 규모로 추정하는 방법, ② 보험사 환급금 데이터를 고려한 적립기금의 추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적립기금의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제II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험권 특성을 반영하는 기금규

모는 은행권과 달리 최소한의 기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여러 시나리오들 중 최소기금을 대안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적립규모의 추정 결과는 향후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부담, 기금의 보험료 차등의 적용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가지 경우만 단순히 적용하는 것보다는 분석이 가능하고 정합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되는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은 시나리오별 결과를 도출한 후에 어느 정도의 적립기금이 국내 현실상 바람직한 가를 범주별로 제시하는 단계를 거쳤다(<표 V-3>참조).

< 표 V-3 > 목표기금의 추정방법

시나리오	과거 실적 기준 규모 추정	헤지율 기준 규모 추정
데이터	구조조정에 투입된 자금 실적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 실적
분석	- 평균적 적립기금 규모 산정	- 평균적 적립기금 규모 산정

나. 적정 보상한도의 추정

(1) 1인당 GDP 대비 보상한도 비율

OECD국가 중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GDP 대비 보상비율을 산출한 결과,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GDP 대비 환급금보상 비율이 2.4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⁶⁸⁾, 국내 예금보험기금의 1인당 GDP 대비 환급금보상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3.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4>참조).

68) GDP 대비 보상비율과 관련하여 환급금에 상응하는 은행의 예금자 보호기금의 보상한도에 대한 IMF의 권고사항은 1인당 GDP 대비 1배~2배임. 예금보험공사 (2000), p.6.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OECD 보호기금들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환급금보상 수준은 약 3,60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현행 5000만원이라는 보상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표 V-4 > 1인당 GDP 대비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의 추정

국가	환급금기준		GDP(B; 2003기준)	GDP 대비 부보비율(A/B)
	최고한도	달러환산(A)		
미국	USD 100,000	100,000	37,368	2.68
캐나다	CAD 60,000	42,857	23,536	1.82
프랑스	EUR 70,000	79,096	29,240	2.70
OECD	평균 (최고한도 기준)			2.40
한국	5,000만원	41,950	12,628	3.32

주: 1. USD 1 = CAD 0.714, EUR 1.13, KRW 1,191; IRL 1 = EUR 1.26974

2. 캐나다의 GDP는 2002년 기준

다른 한편으로, OECD 회원국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1인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을 보면, ① 최고한도만 설정되어 있는 국가는 1인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이 약 5.6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② 최고한도만 설정되어 있는 기금뿐만 아니라 보험금보상 한도에 비율까지도 고려한 경우, 1인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이 약 7.2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V-5> 참조). 따라서 최고한도만을 적용하여 보험금보상 한도를 추정하여 보면, 약 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고한도뿐만 아니라 부분보상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가 약 1억 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기금의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는 OECD의 기금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V-5 > 1인당 GDP 대비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의 추정

국가	보험금기준			GDP(B; 2003기준)	GDP 대비 부보비율(A/B)
	최고한도	비율보상	달러환산(A)		
미국	USD 300,000	-	300,000	37,368	8.03
캐나다	CAD 200,000	-	142,857	23,536	6.07
프랑스	EUR 70,000	-	79,096	29,240	2.70
소계	평균 (최고한도 기준)				5.60
아일랜드	IRL 650,000	65%	606,175	37,639	16.10
폴란드	EUR 30,000	50%	16,949	4,894	3.46
영국	무제한	90%	-	-	-
일본	무제한	90%	-	-	-
전체	평균 (비율보상 포함)				7.27

주: 1. USD 1 = CAD 0.714, EUR 1.13, KRW 1,191; IRL 1 = EUR 1.26974.

2. 캐나다의 GDP는 2002년 기준

따라서 국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의 보상한도 조정과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의 증대를 고려하여 보험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환급금 기준 적정 보상한도 추정

환급금 기준으로 금액계층별 보험계약자의 비율과 금액을 살펴보면 (<표 V-6> 참조), 보험권의 분포는 은행권의 분포와 대조적으로 2,000만원 이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보상한도 5000만원은 생명보험에서 전체 계약자의 99.8%, 금액으로는 전체 환급금의 95.1%까지 지급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99.9%의 계약자와 93.1%의 환급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급금 기준으로는 은행권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⁶⁹⁾, 현재의 환급금

69) 예금보험공사(2000) 참조.

수준의 보상한도는 사실상 완전보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V-6 > 보험권과 은행권의 금액계층별 소비자 구성비

(단위: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계약자	환급금	계약자	환급금	예금자	예금잔고
2천만원 이하	98.7	84.3	99.2	82.8	96.6	24.2
3천만원 이하	0.9 (99.6)	7.2 (91.5)	0.5 (99.7)	6.0 (88.8)	2.2 (98.8)	9.4 (33.6)
5천만원 이하	0.2 (99.8)	3.6 (95.1)	0.2 (99.9)	4.3 (93.1)	0.6 (99.4)	5.7 (39.3)
5천만원 초과	0.2 (100.0)	4.9 (100.0)	0.1 (100.0)	6.9 (100.0)	0.7 (100.0)	60.7 (100.0)

주: 1. 은행은 2000년 6월말 기준, 보험권은 FY2004 기준.

2. ()은 누적 비율임.

자료: 보험권은 11개 보험사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은행권은 예금보험공사(2000).

이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부분보장 전환에 대비하여 제시한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공사는 IMF의 권고 수준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금융기관 예금자별 예금잔고 데이터를 기초로 2,000만원의 보상한도를 제시한 바 있다. 2,000만원은 전체 예금자의 99% 내외의 보호와 IMF의 권고수준인 1인당 GDP의 1~2배를 근거로 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준용할 때, 보험권의 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보상한도가 2,000만원일 경우 생명보험에서 전체 계약자의 98.7%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보호대상 금액의 84.3%까지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2,000만원의 보상한도 수준은 전체 계약자의 99.2%가 보호받고, 전체 금액의

82.8%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2,000만원이 적절한 보상한도라고 판단된다.

< 표 V-7 > 지급보험금의 계약자 구성비

(단위: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자	보험금	계약자	보험금
2천만원 이하	97.7	58.2	98.9	59.9
3천만원 이하	1.0 (98.7)	8.7 (66.9)	0.4 (99.3)	7.7 (67.6)
4천만원 이하	0.3 (99.0)	4.7 (71.6)	0.2 (99.5)	6.0 (73.6)
5천만원 이하	0.3 (99.3)	4.8 (76.4)	0.2 (99.7)	5.3 (78.9)
8천만원 이하	0.4 (99.7)	8.8 (85.2)	0.2 (99.9)	17.0 (86.6)
9천만원 이하	0.0 (99.7)	0.9 (86.1)	0.0 (99.9)	2.0 (88.6)
1억원 이하	0.1 (99.8)	4.0 (90.1)	0.0 (99.9)	5.0 (90.5)
1억원 초과	0.2 (100.0)	9.9 (100.0)	0.1 (100.0)	4.5 (100.0)

주: 1. FY2004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금액계층별로 나눈 것임

2.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누적건수와 누적금액의 비율을 의미.

자료: 11개 보험사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그러나 보험권 보상한도의 상한(ceiling)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보험금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한 특정 기간 동안에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는 환급금을 받을 유사 예금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한 본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보험금 보장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 본 1인당 GDP 대비 보험금보상 비율은 최저 8천4백만원에서 최고 1억1천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준에 따를 때, 보험사가 지급불능에 처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의 99.7%~99.8%에게 지급받을 보험금의 85.2%~90.1%를 보상하는 수준이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의 99.9%에게 지급받을 보험금의 대략 86.6%~90.1%를 보상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80%~90%의 비율보상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기금들과 비교해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나. 적립목표액의 추정

(1) 해지율을 이용한 목표기금 규모 추정

기금의 적립목표액을 급격한 해지율 상승에 따른 유동성 대비 자금의 규모로 설정할 경우, 해지율에 상응하는 유동성 자금과 이와는 무관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정상적인 보험금 규모를 추정하여 적정 목표기금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급금과 보험금 지급 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① 환급금 기준으로 목표기금의 규모를 추정한 후, ② 환급금과 보험금지급의 합계 기준으로 목표기금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목표기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지급여력 부족 또는 부실지정 보험사의 해지율과 정상 보험사의 해지율 자료(<표 V-10> 참조)를 기초로 하여 외환위기 직후의 최악의 해지율을 기금 규모를 추정하는 해지율로 사용하였다.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선정된 해지율 시나리오에 의해 ① 환급금만을 고려하여 목표기금을 추정한 결과(<표 IV-8>참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최소 3,386억원에서 최대 6,772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된 반면,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최소 2,170억원

에서 최대 5,424억원의 기금규모가 추정되었다. 한편, ② 환급금과 보험금을 모두 고려할 경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3,856억원에서 최대 7,712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산출되었으며,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2,640억원에서 최대 6,364억원의 기금규모가 추정되었다.

< 표 V-8 > 생명보험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단위: 억원)

해지율 시나리오	환급금 ①		환급금 + 보험금 ②	
	Max	Min	Max	Min
지급불능 2개사 이하	3,386	2,170	3,856	2,640
지급불능 3개사 이하	5,079	3,245	5,784	3,959
지급불능 4개사 이하	6,772	5,424	7,712	6,364

- 주: 1. MAX는 외환위기 직후 부실사 해지율(36.1%) 반영.
 2. MIN은 외환위기 직후 건전사 해지율(28.9%) 반영.
 3. 목표기금의 규모는 중소형사 지급불능을 기준으로 산출.

다음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해지율 시나리오에 의해 목표기금을 추정한 결과(<표 V-9>참조), ① 해약환급금만을 고려하는 경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568억원에서 최대 1,136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된 반면, ②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455억원에서 최대 910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되었다. 한편 ② 환급금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부실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1,480억원에서 최대 2,960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된 반면, 건전사 해지율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1,367억원에서 최대 2,735억원의 목표기금 규모가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기금 규모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보다 많은 목표기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V-9 > 손해보험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단위: 억원)

해지율 시나리오	환급금 ①		환급금 + 보험금 ②	
	Max	Min	Max	Min
지급불능 2개사 이하	568	455	1,480	1,367
지급불능 3개사 이하	852	683	2,220	2,006
지급불능 4개사 이하	1,136	910	2,960	2,735

- 주: 1. MAX는 외환위기 직후 부실사 해지율(36.1%) 반영.
 2. MIN은 외환위기 직후 건전사 해지율(28.9%) 반영.
 3. 목표기금의 규모는 중소형사 지급불능을 기준으로 산출.

< 표 V-10 > 외환위기 이후 보험시장 해지율 추이

해지율	생명보험시장 평균	비 고
1999. 6	30.9%	부실사 36.1% / 건전사 28.9%
1999. 9	25.0%	
1999.12	25.7%	
2000. 3	20.5%	
2001. 3	27.1%	
2002. 3	22.1%	
2003. 3	14.8%	
2004. 3	16.2%	
2005. 3	14.2%	손해보험 16.0%

(2) 구조조정 소요자금 기준 목표기금 규모 추정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보험회사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된 총 구조조정자금은 9조1,327억원이며, 이중 8조7,691억원(45.2%)은 생명보험사에, 3,636억원(1.9%)은 손해보험사(보증보험사 제외)에 각각 투입되었다. 이외에 10조 2,500억원의 자금이 예금보험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닌 보증보험사에 긴급조치를 통해 투입되었다(<표 V-11> 참조).

< 표 V-11 > 기금의 부실보험사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보험권			보증	계	손실 분포
	생명보험	손해보험	소계			
2001년 이전	85,653	381	86,034	102,500	188,534	94.2%
2002년	-	869	869	-	869	1.0%
2003년	1714	2,386	4,100	-	4,100	4.5%
2004년	324	-	324	-	324	0.3%
합계	87,691	3,636	91,327	102,500	193,827	100.0%

주: 예금보험공사(2005), p. 25를 기초로 작성.

2001년까지 보험회사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 <표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건전성 중시의 감독정책 영향으로 보험시장의 부실규모는 전체 부실규모의 5% 이내로 급감하고 있다. 전체 부실규모 분포를 추정하여 보면, 2001년 이전에 94.2%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에는 1.0%, 2003년에는 4.5%의 분포를 보이는 등 보험시장의 환경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의 보험시장의 부실규모는 거의 0에 가까운 0.3%(324억원)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정 결과는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의 목표기금액은 최소 5,400억원에서 최대 1조80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손해보험의 목표기금액은 최소 2,424억원에서 최대 4,84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2개사를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약 5,400억원, 손해보험사는 2,424억원의 목표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V-12 > 구조조정에 필요한 목표기금의 규모 추정

(단위: 억원)

구조조정 실적	생명보험	손해보험
지급불능 2개사 이하	5,400	2,424
지급불능 3개사 이하	8,100	3,636
지급불능 4개사 이하	10,800	4,848

주: 구조조정 실적 중 대형사 구조조정 실적은 제외하고 산출된 것임.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결과들을 도출함에 있어서 4개 미만의 보험사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사 규모에서도 중소형 보험사의 지급불능을 가정하여 목표기금 규모를 추정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과거의 전례로 보아 초대형 보험사의 파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금만으로 파산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시장의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외환위기와 같이 감독규제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지급불능 사례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셋째, 최소기금 규모로 2개사 미만의 지급불능에 대처할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해외 사례. 넷째, 보험시장의 부실 보험사 분포, 마지막으로 모형에 의한 기금추정은 아직 데이터와 가정에서 해결할 사항이 많음을 고려했다.

2.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가. 보험계약자 보상한도의 이원화

보상한도 분석 결과, 5000만원의 보상한도는 해약환급금 기준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반면, 보험금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보상한도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는 낮추는 반면, 보험금 기준의 보상한도는 높이는 이원화 방향으로 보상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V-13> 보상한도 조정안

구 분	해약환급금	보험금	비 고
현 행	5000만원 한도	5000만원 한도	- 보험금 기준으로는 부족 - 도덕적 해이 방지에 미약
제1안	2000만원 한도 (전액보상)	2000만원 + 초과분× 90% (한도: 무제한)	- 소액 계약자 보호 중점 - 고액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제2안	보험금(해약환급금포함)의 90% (한도: 무제한)		- 전계약자 도덕적 해이 방지 - 충분한 보장한도

따라서 두 가지 보상한도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다(<표IV-13>참조), 제1안은 모든 일반 계약자에게 2000만원까지 전액을 보상하고,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부분보상을 통해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제2안은 전액보상의 최저한도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무제한으로 90%의 부분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계약자에게 부실한 보험사를 선택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어느 기준이든 현행 5,000만원 보상한도를 조정함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 도입

기금적립에서는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 도입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은 2개사가 파산하였을 때 필요한 지원액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따라서 목표기금의 규모는 생명보험의 경우 최소 3,856억원에서 최대 5,400억원, 손해보험의 경우 최소 1,480억원에서 최대 2,424억원이 적정하다고 본다. 보험권 전체로는 최소 5,336억원에서 최대 7,824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표 IV-14>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의 설정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권 전체
제1안	5,400억원	2,424억원	7,824억원
제2안	3,856억원	1,480억원	5,336억원

제1안과 제2안을 비교할 때, 보다 현실적인 안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요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제1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보험은 5,400억원, 손해보험은 2,424억원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본다. 제2안의 경우에는 해지율을 고려한 유동성 부족에 대응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1안에 비해 미래지향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생명보험의 목표기금은 약 3,856억원, 손해보험의 목표기금은

약 1,480억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기금의 배분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복수기금제의 도입

예금보험제도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근본적인 토대는 기금분리 원칙의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에서는 다른 기금과의 관계나 다른 기금의 지급능력 정도에 따라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보상한도 조정이나 적립규모 설정 등에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의 단일기금 방식의 기금 운영에서 오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 표 V-15 > 단일기금과 복수기금의 비교

구 분	단일기금	복수기금	구 분	단일기금	복수기금
기금 유동성	+	-	금융기관 차등화	-	+
산업연계성 강화	-	+	시장변화 대응	-	+
상호보조 방지	-	+	경쟁 촉진	-	+
금융권 분쟁축소	-	+	관리/차입비용 절감	+	-

주: 비교우위: “+”, 비교열위: “-”를 나타냄.
 자료: 김대식 등(2004b), p.164를 일부 수정.

실제로 예금보험기금은 통합 이후 줄곧 금융권간 여러 기금들 간의 형평성에 매달려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기금의 유동성은 커질 수 있어도 보험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과 보험산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상환기금에서 나타난 상호보조의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여전

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단일기금방식의 운영에서 촉발된 보험요율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할 목표기금제나 보험료차등화 등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데 복수기금에 비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단일 관리주체의 통합기금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금융권별 기금 운영은 개별 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금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복수기금제의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VI. 결론 및 제언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단일기금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 소비자들의 보호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복수기금제를 채택하여 다양한 니드를 수용할 수 있는 터전과 기금의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기금의 금융권별 니드가 다르고, 도덕적 해이 등 기금운영에 따르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도 기금의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복수기금제의 도입은 금융소비자와 기금가입자 모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복수기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기금과 금융권간의 각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장한도의 이원화를 제안한다. 보험계약자의 본래 목적인 위험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금 기준으로 보상한도가 상향될 것을 제안하고, 보험계약의 연속성 단절을 의미하는 해약환급금 기준의 보상한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약환급금의 성격상 예금 한도와 수준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나, 현재와 같은 단일기금 방식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보험권의 보상한도를 달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은행권의 인출쇄도와 시스템리스크에 상응하는 기금의 연장선상에서 보험권의 기금규모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험권에 도입된 예금보험기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계약의 연속성에 근거한 계약이전 등의 정리방식과 더불어 최소한의 목표기금 적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예금보험기금은 정부의 지급보증과 단절되기 위한 걸음마를 시

작하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의 오류가 내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구축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참고 문헌

- 김대식, 박영석, 신진영, 이준행, 정지만,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적립 목표 규모」, 정책심포지엄, 한국금융학회와 예금보험공사, 2004.6.8.(a)
- _____,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적립목표 규모와 보험 요율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제2호, 2004.12.(b)
- 김형원, 이재준, 이은영, 「국내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세미나, 삼성금융연구소, 2005.6.15.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요율산정의 기본이론』, 1988, pp.84-89.
- 송홍선, 『초대형은행과 규율규제 논의』 CEO Report 2004-20호, 예금보험공사, 2004.11.9.
- 예금보험공사, 『예금부분보험제도 시행방안』, 세미나 자료, 2000.9.21.
- _____, 「토론」,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 창립5주년세미나 보고서, 2001.10.17.
- _____, 『2004 연차보고서』, 2005.3.
-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금융분석정보: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현황」, 2001-8호, 2001, 10.31.
- 이민환, 원선희, 김연경, 『주요국 금융소비자보호의 현황 및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2004.12.
- 이성남, 김건,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2003, pp.342-370, pp.448-477.
- 이순재,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보험부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2004-7,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5.1.
- 이승철,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자료99-2,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12.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 2002.6.26.

- 전선애, 「예금보험기금의 조달방식과 목표적립률」, 『KDIC 금융연구』 제3권제3호, 2002. 9.
- 전홍택, 안영석,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KDIC 금융연구』 제2권제2호, 2001.7.
- 정운찬, 『예금보험론』, 경제연구총서5,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2.
- 日本 金融廳, 「生命保險契約者 保護制度의 改善方案에 對하여(案)」, 第二部會24-1, 2005.2.16.
- European Commission on Internal Market DG, "Working Paper 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Markt/2513/04-EN, 2004.10.
- European Commission on Internal Market DG, "Working Paper 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Markt/2529/05-EN, 2005.1.
- European Commission on Internal Market DG, "Report on the Member States' replies to questionnaire (Markt/2506/02) 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Annex to Markt/2517/02-EN, 2002.
- Garcia, G., "Deposit Insurance: A Survey of Actual and Best Practices", IMF Working Paper 99-5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pril 1999.
- _____, "Deposit Insurance: Actual and Good Practices", IMF Occasional Paper 19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pril 2001.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Insurance Deposit Insurance Survey: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U.K.)", 2003.1.20. (www.iadi.org)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s and Methodology*, Principles No.1, October 2003. (www.iais.org)

- Leflaive, V.,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Solvency : Comparative Analysis in OECD Countries,"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pendium for Emerging Economies*, Book 1 Part1:2)a, OECD, 2001, pp.38-43.
- Moysey, A. W., "Deposit Insurance and Other Compensation Arrangements", Task Force on the Future of the Canadian Financial Services Sector, September 1998.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Brokers (NAIB), 「Managing Insurance Insolvency」, November 1988, pp.22-23.
- Norton, J, 「The Single Regulator Model and the United Kingdom - Pros, Cons and Issues with Deposit Insurance: Based on an IFLU-London Repor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Third Annual Conference, Brunner Switzerland, Oct 26-27, 2004.
- Skipper, D. H., R. W. Klein, and M. F. Grace, 「보험규제의 대안적 접근」, 『보험산업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연구논문집1,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 pp.14-39.
-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04: growing premiums and stronger balance sheets, Sigma, No.2, 2005. OECD
- Yasui, T., "Policyholder Protection Funds: Rationale and Structure", *Policy Issues in Insurance :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the OECD Countries*, No.3, OECD, 2001.

[부록] 금액계층별 해약환급금 및 지급보험금 분포

(단위: %)

구간 ¹ (이하)	해약환급금 구성 ²				지급보험금 구성 ³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0만원	93.2	51.8	85.7	42.5	94.8	39.3	89.1	25.7		
1000만원	97.3	67.5	94.0	62.3	97.7	49.9	94.1	39.9		
1500만원	98.6	76.5	97.3	76.0	98.5	54.9	96.6	51.2		
2000만원	99.2	82.8	98.7	84.3	98.9	59.9	97.7	58.2		
2500만원	99.5	86.4	99.6	88.9	99.2	64.0	98.3	63.4		
3000만원	99.7	88.8	99.7	91.5	99.3	67.6	98.7	66.9		
3500만원	99.8	90.6	99.8	92.9	99.4	70.7	98.9	69.4		
4000만원	99.9	91.6	99.8	93.8	99.5	73.6	99.0	71.6		
4500만원	99.9	92.3	99.8	94.5	99.6	76.2	99.1	72.9		
5000만원	99.9	93.1	99.8	95.1	99.7	78.9	99.3	76.4		
6000만원	100.0	100.0	100.0	100.0	99.8	81.7	99.5	79.8		
7000만원					99.8	84.2	99.6	82.4		
8000만원					99.9	86.6	99.7	85.2		
9000만원					99.9	88.6	99.7	86.1		
1억원					99.9	90.5	99.8	90.1		
2억원					100.0	100.0	100.0	95.5	100.0	97.7
3억원								97.4		99.5
3억원초과								100.0		100.0

주: 1. 금액 구간은 각각 해당 금액을 상한으로 함.

2. 2005년 3월말 기준. 손해보험 6개사, 생명보험은 5개사 통계에 기초.

3. FY'04의 1년간 지급 실적. 손해보험 4개사, 생명보험은 5개사 통계에 기초.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의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2005.1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 이순재, 2005.1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8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 방안 / 정중영, 2005.8

-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6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9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9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업창회,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업창회,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업창회,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6.
- 2005-1 금리시나리오 모델 생성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계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혜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이기형, 김혜식, 2004.10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9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중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 2004-6 역모지기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3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4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7
-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4
-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 참여 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9
-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이기형, 김해식, 2004.11
-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5. 1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3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4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3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6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7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7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7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계간	_____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300,000원	₩150,000원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저자약력

류건식

전북대학교 경제학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재무연구팀장)
(keon@kidi.or.kr)

김해식

연세대학교 경제학석사
현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
(haeskim@kidi.or.kr)

연구보고서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05년 9월 30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신우씨앤피

ISBN 89-5710-027-x 93320

定價 10,000원